

고 시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-168호

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380호 (1978.11.30.)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347호 (1979.9.24.)로 동자동구역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85-885호 (1985.12.28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-7호(2017.1.1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-151호(2017.12.1.)로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5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명 칭 :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5-1번지 일원
- 면 적 : 10,533.00㎡ (대지 면적 : 7,944.20㎡, 정비기반시설 : 2,588.80㎡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DB생명보험(주) 대표이사 이태운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(대치동, 동부금융센터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0. 9. 25.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건폐율(%)	연면적(㎡)	용적률(%)	층수 (지하/지상)	주용도	비고
7,944.20	4,766.01	59.99	122,809.19	1,090.06	7층/33층	숙박시설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 분	공동주택 (세대)	공동주택 외 건축시설 면적(㎡)				비 고
		판매시설	업무시설	숙박시설	문화 및 집회시설	
환지시설	1	236.65	-	-	-	
보류시설	1	177.55	-	-	-	
체비시설	68	7,214.19	48,923.37	53,536.96	521.96	
계	70	7,628.39	48,923.37	53,536.96	521.96	

다. 신설 또는 용도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신 설					용 폐				
종 류	명칭	규모(㎡)	설치비용(원)	관리청	종 류	명 칭	규 모	국공유 지(㎡)	무상양 여(㎡)
도 로	광로 3-9	312.60	15,018,710,000	시행자 설치 후 용산 구청 무상 귀속	도 로	동자동 1-26	237.10	237.10	237.10
	중로 2-197	640.80				동자동 1-27	12.30	12.30	12.30
	중로 2-198	718.40	9,867,551,000			동자동 14-56	31.50	31.50	-
공 원	동자 공원	917.00	11,337,171,000						
계		2,588.80	36,223,432,000		계		280.90	280.90	249.40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2021년 예정

6. 관계서류 : 생략(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비치서류와 같음). 끝.